

구미시 작은도서관 설치·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시 작은도서관 설치·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17. . .
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작은도서관 설립기준, 등록취소 사유 및 운영자 자격요건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, 등록취소 시 배상책임 면제 조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상위 법령에 근거 없는 작은도서관 설립기준 삭제(안 제6조)

- ‘매년 신규자료 추가확보’ 문구 삭제

나. 작은도서관 등록취소 사유 정비(안 제8조)

- 당초 : 등록취소 사유별 표기
- 변경 : 상위 법령인 「도서관법 시행령」 조문 인용

다. 작은도서관 등록취소에 따른 손해 배상책임 면제 조항 삭제(안 제8조)

- 市에 과실이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하므로 배상책임 면제 문구 삭제

라. 작은도서관 운영자 자격요건 정비(안 제10조)

- 상위 법령에 근거 없는 운영자 자격요건 대신 운영 전문 인력 확보 노력으로 규정

3. 조 례 안 : 붙임

4. 참 고 사 항

가. 관계법령 : 「도서관법」, 「도서관법 시행령」, 「민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구미시 작은도서관 설치·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작은도서관 설치·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1,000권 이상의 장서

제7조제1항 중 “제6조의 규정”을 “제6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”을 “제1항”으로, “제6조의 규정”을 “제6조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제7조의 규정”을 “제7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제6조의 기준에 미달하거나 「도서관법」 제31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제8조제3항을 삭제한다.

제10조의 제목 “(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)”을 “(운영자의 직무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갖추어야”를 “갖춘 전문인력 확보에 노력하여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설립 기준) 작은도서관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 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 1. 1,000권 이상의 장서, 매년 신 규자료 추가확보 2. · 3. (생 략)	제6조(설립 기준) ----- ----- -----. 1. 1,000권 이상의 장서 2. · 3. (현행과 같음)
제7조(등록절차 등) ① 법인 · 단 체 또는 개인이 작은도서관을 설립하고 등록하고자 할 때는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자료를 갖추고 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.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작은도서관 등록신청을 받으면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부합 되는지를 검토 후 등록증을 교 부하여야 한다.	제7조(등록절차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제6조----- -----. ② ----- 제1항----- ----- ----- 제6조----- -----. 제8조(폐관 및 등록 취소) ① 제7 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작은 도서관의 설립자가 그 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.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
제8조(폐관 및 등록 취소) ① 제7 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작은 도서관의 설립자가 그 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.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	제8조(폐관 및 등록 취소) ① 제7 조----- ----- ----- -----. ② 제6조의 기준에 미달하거나 「도서관법」 제31조의2제1항

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1. 사용목적 및 설립요건을 위반하였을 경우

2. 작은도서관의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

3.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

4. 공공질서 및 독서문화를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

5. 이용자로부터 데이터베이스 이용 수수료, 개인연구실·회의실 등 이용 수수료, 자료 복사료, 강습·교육 수수료 이외의 이용료를 받는 경우

6.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

③ 제2항의 경우에는 운영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시장은 이에 따른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제10조(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)

① (생략)

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

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<삭 제>

제10조(운영자의 직무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---- 갖춘 전

야 한다.

1. ~ 3. (생략)

문인력 확보에 노력하여야 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관계법령

□ 「도서관법」

제31조의2(등록의 취소 등) ① 시·군·구청장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
 2. 제31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
 3.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 등을 유지하지 못하여 제2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 4.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도서관의 설립목적을 위반하여 관리·운영한 경우
-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그 도서관의 대표자는 시·군·구청장에게 1개월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.

□ 「도서관법 시행령」

제3조(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)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
② 생략

[별표 1]

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

2. 개별기준

가. 공공도서관

3) 작은도서관

시설		도서관자료
건물면적	열람석	
33제곱미터 이상	6석 이상	1,000권 이상

비고: 건물면적에 현관·휴게실·복도·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.

□ 「민법」

제750조(불법행위의 내용)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

소관 실 · 과		문화관광담당관실
입 안 자	과 장	박 종 수
	담 당	이 창 수
	담 당 자	박 재 응 (480-6602)